

보도시점

2026. 6. 25.(목) 조간
2026. 6. 24.(수) 12:00

배포 2026. 6. 24.(수)

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,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

- 복지멤버십 '정기안내' 처음 도입, 2026년 상반기 첫 실시 -
- 가입자 최신 소득·재산 정보로, 53만 가구에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(6.25.) -

【관련 국정과제】 77-2.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'정기안내'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.

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*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.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·소득·재산·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.

* ('26년 6월 기준) 대국민 포털 복지로 내 5,431개의 복지서비스 안내 중

그동안 연령,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'수시안내'로 제공되었으나, 소득·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되었다.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.

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·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.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(79만 건)에 카카오톡·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.

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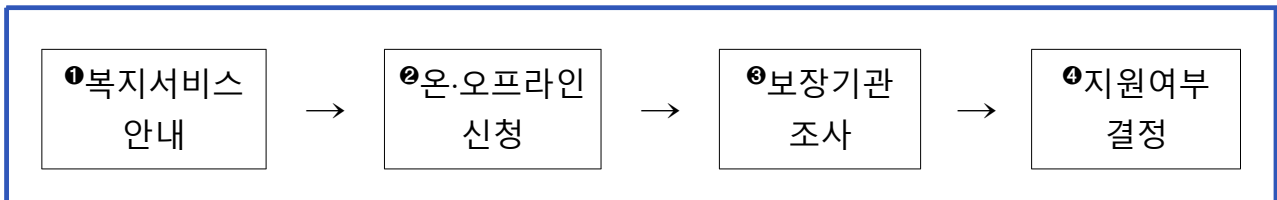
<정기 안내로 처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>

- **(광주전남, 30대 1인 가구)** 2022년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, 이번 정기 안내로 차상위계층확인사업, 생계·의료급여 등 4종을 처음 안내받았다.
- **(대전, 50대 3인 가구)** 2023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,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, 고교학비 지원,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 안내받았다.

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,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.

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 (오프라인)이나 복지로·고용24 등 포털(온라인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

<안내 이후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>

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”라며 “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·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,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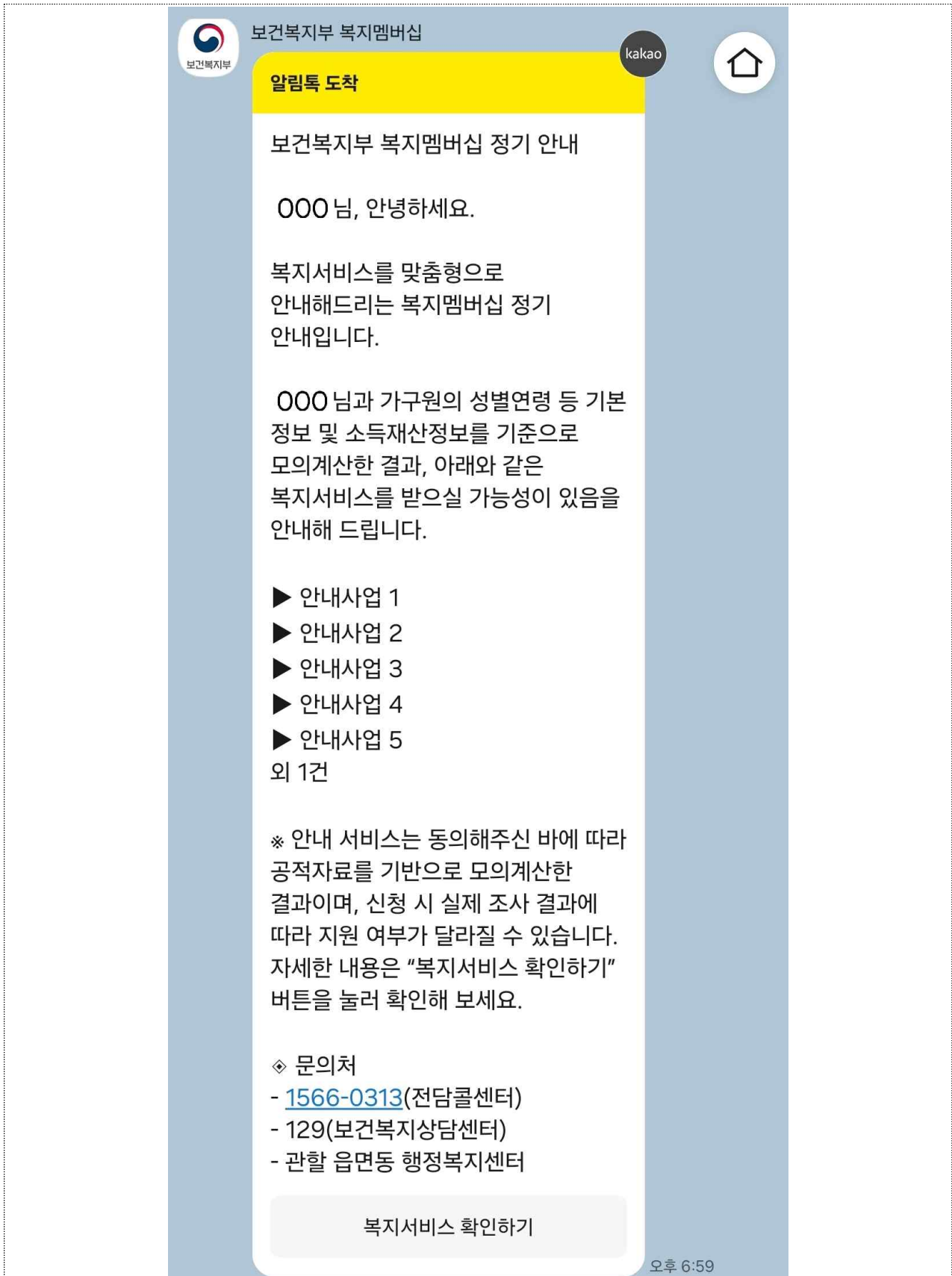
아울러 “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,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라고 강조했다.

* (복지멤버십 가입방법)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내 온라인 신청

- <붙임> 1.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
 2. 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 제도 개요

담당 부서	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	책임자	과 장	송영조 (044-202-3140)
		담당자	사무관	남태웅 (044-202-3146)





붙임 2

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 제도 개요

□ **(정의)** 가입자의 연령·소득·재산 등을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는 서비스('21.9.~)

*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」

§22조①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.

□ **(가입대상)** 사회보장급여 旣 수급자·신규 신청자('21.9.~), 전 국민('22.9.~)

* (가입방법)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** (가입자 수) ('24년) 997만 명 → ('25년) 1,134만 명 → ('26.5월) 1,232만 명

□ **(안내 사업)** '26.5월 기준 163종(중앙부처 84종, 지자체 79종) 사업

* (안내 사업 수) ('23년) 80종 → ('24년) 127종 → ('25) 163종 → ('26.5월) 163종

□ **(안내 절차)** 가입 시기(가입 후 7일·30일 이내, 수시, 정기)별 안내

* 수급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(카카오톡, 문자, 이메일)

○ **(7일 이내)** 성별·연령·수급자 여부 등 분석 후 최초 수급가능성 안내

○ **(30일 이내)** 소득·재산 등을 분석하여 2차 수급가능성 안내

○ **(수시)** 출산, 연령 도래,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수급가능성 안내

○ **(정기)** 금융정보 동의자의 소득재산을 정기 조사·판정(연 2회)하여 수급가능성 안내

